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224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소엽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E 임야 966㎡ 중 334/96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4. 26. 접수 제11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처 F이 2006. 3. 27. 사망하자 F의 동생인 피고는 2006. 4. 26.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200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를 속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상속등기에만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그밖에 이미 15년 전에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